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금융감독원

배포시점 2026.11.6.(금) 보도 배포시

금융권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

✓ 금융권 공동 **피해예방 조치 강화**, 현재까지 **2차 피해 보고사실 없음**

✓ 2차 피해 예방조치 지속을 위해 **특별대응기간 연장**(~12월 말)

■ 그간의 대응 경과

금융당국은 최근 **금융회사**에서 **개인정보 유출사고**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**보이스피싱**, **스미싱**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**소비자경보(주의, 10.6.)**를 발령*하고, 금융권과 공동으로 「**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**」(10.6.~11.5.)을 운영해왔다.

*「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·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.」

금융당국은 **금융권**과 **긴밀한 협력체계**를 구축하여 정보유출 관련 2차 **피해 발생 여부**를 계속 **모니터링**하고 있다. 금융권은 정보유출 고객 **전담 상담창구**를 운영하고 유출고객 대상으로 **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**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.

한편 **11.6. 현재까지**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, 스미싱 등으로 **고객 자금**이 **유출된 피해 사례**는 **보고되지 않았다**. 이에 기존의 **소비자경보**는 '**주의**' 단계를 **유지**하기로 하였다.

금융권의 피해예방 조치 주요사례

구 분	관련내용
❶ 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	· 유출고객 대상 안내 및 유의사항 메시지 발송 · 유출고객 전용 상담센터 운영 등
❷ FDS 모니터링 강화	· 유출고객 대상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 실시 · 유출고객이 고액 이체시 즉시 본인확인 실시 등
❸ ASAP 활용 공동 대응	· 이상거래 확인시 ASAP에 신속히 공유 등
❹ 피해구제 관리·감독	· 유출고객에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 신속 접수 및 감독당국 보고체계 마련 · 유출고객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등

■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 연장 및 향후 계획

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**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**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, 지속적인 피해예방 조치를 위해 당초 **11월 5일**까지였던 **특별대응기간**을 **12월 말까지 연장**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.

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피해예방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, **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금융회사**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하여 **예방조치**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.

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**이행 상황**을 **지속 점검**하고, 보이스피싱 등 **이상징후**가 확인되는 경우 **신속히 대응**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■ 소비자 당부사항

금융소비자들은 **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**의 **인터넷주소(URL)**를 클릭하지 **않도록** 유의하고, **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** 필요시 **상담**(국번없이 ☎1394)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. 아울러 **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** 등 피해예방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.

※「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」: (붙임1) 참고
「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방법 등」: (붙임2) ~ (붙임7) 참고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태훈	(02-2100-2970)
		담당자	사무관	이다행	(02-2100-2975)
	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	책임자	국 장	이정만	(02-3145-8150)
		담당자	팀 장	정윤미	(02-3145-813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

사전에 미리 해두기	
① 안심차단서비스 가입	「**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**」에 가입*하여 명의도용 대출·계좌개설·오픈뱅킹 등을 사전 차단 *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'내계좌한눈에'(payinfo.or.kr) 및 은행앱 통해 신청
② 개인정보노출자 등록	「**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***」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여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 및 카드 발급 등 제한 *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'파인'(fine.fss.or.kr) 접속
③ 내 계좌 및 대출 점검	'내 계좌 한눈에'(payinfo.or.kr)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실행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
④ 개인정보 저장 금지	신분증 사본, 계좌 비밀번호 등 **개인정보**를 **휴대폰에 저장하지 않기**

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	
① URL 클릭 금지	'개인정보 유출 확인', '피해보상', '저금리 대출' 등을 안내하는 **문자의 URL은 누르지 말고 삭제**
② 내 정보를 알아도 의심	상대방이 이름·소득·대출정보 등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지 않기
③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	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대출 안내는 해당 금융회사 **공식 홈페이지·앱** 또는 **고객센터 대표번호**로 **직접 확인**
④ 요구에 응하지 않기	**'선입금', '기존대출 상환', '앱 설치', '인증번호·신분증 사진 요구'**는 모두 사기이므로 거절

피해가 의심될 때	
① 즉시 지급정지 요청	☏112에 즉시 **지급정지** 요청
② 피해구제 신청	지급정지 요청 후 **최대 14일 이내**(가급적 3영업일 이내 권장) 해당 금융회사에 **피해구제 신청서 제출**
③ 악성앱 조치	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**다른 전화**로 **신고**하고, 휴대폰을 백신앱으로 점검하거나 **초기화**
④ 추가 피해 차단	개인정보노출자 등록, 금융거래 비밀번호 변경 등

붙임2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(은행 앱)

① 홈 화면-"메뉴" 클릭



② 인증/보안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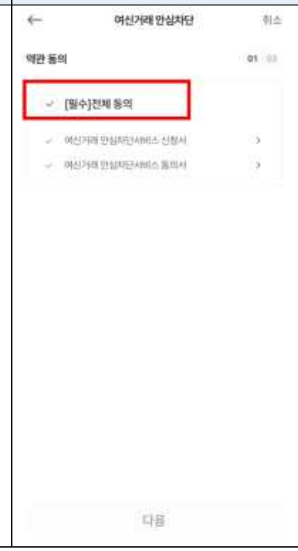
③ 안심차단서비스 클릭



④ 여신거래 차단 선택



⑤ 약관 동의



⑥ 신청 완료



붙임3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(은행 앱)

① 홈 화면-"전체메뉴" 클릭



②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클릭



③ 안심차단 신청



④ 오픈뱅킹 이용정보 확인



⑤ 동의서 작성



⑥ 결과 확인



붙임4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(어카운트인포 앱)

① "내 금융 안심차단" 클릭



② 안심차단 신청 화면



③ 신청 가능 금융회사 확인



④ 오픈뱅킹 이용정보 확인



⑤ 가입 신청



⑥ 결과 확인



붙임5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



붙임6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



붙임7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

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출금 · 이체

오픈뱅킹안심차단

서비스 신청으로 예방하세요.



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오픈뱅킹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로, 차단 희망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적용 대상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우체국, 증권사에서 **개설한 모든 계좌**



신분증 분실,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**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계좌 출금 및 조회를 방지**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.



거래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거나,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(모바일) 및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**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

서비스 해제 신청은 보이스피싱, 명의 도용 사기범의 무단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
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
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